**효자아트홀 대관 신청서**

**1. 신청내용**

|  |  |  |  |  |
| --- | --- | --- | --- | --- |
| **공 연 명** |  | | | |
| **공연단체** |  | | **장 르** |  |
| **공연일시**  **(총 대관시간)**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 월 일 시 분 ~ 시 분) | | **공연시간** | 시간 분 |
| **무대설치**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까지 | | **공연인원** | 명 |
| **리 허 설**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까지 | | **스텝인원** | 명 |
| **연 락 처** | 성 명: | e-mail: | | |
| 휴대폰: | 회 사: | | |
| **주 소** | 우) | | | |

**2. 신청대상 :** 포항 문화예술 단체(고유번호증 소유必)

**3. 대관 시 지켜야 할 사항**

⭘ 효자아트홀 대관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은 주중에만 가능하며, 대관 가능일 외 신청은 불가합니다.

⭘ 효자아트홀 사정에 따라 공연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대 작업 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합니다.

* 대관공연은 주최측에서 진행하며, 효자아트홀은 시설과 장비사용을 지원합니다.

**포스코 효자아트홀 대관규정 준수를 약속하며, 위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poscoLogo보내실 곳: 효자아트홀 대관담당/ [px992116@posco.com](mailto:px992116@posco.com) / 문의: 054) 221-9764

**효자아트홀 대관규정**

개정일:’25.10.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자아트홀(이하 " 아트홀 "이라 한다)의 대관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문화예술 수요 충족 및 창작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범위)

1. 아트홀의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부대시설 (이하 “ 대관시설 ”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시설 : 공연장

나. 부대시설 : 위 기본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장비

2. 아트홀은 대관시설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3조(대관신청)

1. 제2조의 시설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 신청인 "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와 공연계획서, 공연자 또는 행사주최자의 이력 및 경력, 출연자 명단, 고유번호증을 아트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대관신청은 주중 대관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청기간은 아트홀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제3항의 ‘신청기간’ 이라 함은 수시 또는 비정기적으로 접수하며, 홈페이지 또는 사내게시를 통하여

안내한다.

5. 대관신청서는 아트홀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양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관심의위원회)

1. POSCO는 제2조 제1호 시설의 정기대관 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아트홀內에

대관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제1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대관승인)

1. 아트홀은 대관신청 접수 후 별도로 정한 기일 내에 이를 심사, 대관승인 가부 결과를 통지한다.

2. 아트홀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대관일정이 확정된 이후라도 아트홀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제6조(대관제한 및 금지)

1. 아트홀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종교적, 상업적, 정치적 행사로 구성된 공연

나. 학교 및 학원 행사(단, 포스코 산하 교육재단은 사내행사 기준 적용)

다. 직전 또는 해당일 공연규정 위반 시 공연 중단 및 향후 대관을 제한한다.

라. 기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마. 합당한 사유없이 취소할 경우

바. 직전 공연 시 관람인원이 200명 이하인 경우

사. 동일단체가 연간 1회 이상 출연하거나 대관을 신청할 경우

2. 위 1항에 근거한 대관의 제한 또는 금지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아트홀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및 배상책임)

1.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아트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고, 아트홀이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응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안전관리)

1. 공연이나 행사 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이나 화약류 등의 위험한 도구는 사용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50kw 이상의 외부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전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3. 사용자는 공연장 주변도로 위 주차나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무대 구성 및 조명 설치를 위한 작업 시 작업자는 안전모와 안전화 등 제반 규정에 맞는 복장과 시설을 갖추고 진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설비)

1.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 시설물 "이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아트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트홀에서 직접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제10조(입,퇴장 제한)

아트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입,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주취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아트홀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배상책임)

1. 아트홀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공연 취소, 정지 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대관 사용에 있어서 계약서 및 기타 아트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3.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는 사용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적용규정)

이 규정은 아트홀과 사용자 간의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상의 기준 및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공연 진행 시 확인 사항도 동일한 효력발생

* 관련 법규 준수

1. 공연법 관련

* 「공연법」제11조의4, 「동법 시행령」제9조의4에 따라 스태프 및 출연자 전원은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저작권법 관련

* 「저작권법」제29조, 제2조22, 제16조, 제18조에 의거 공연에 사용되는 음원 및 영상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저작권 관련 책임은 사용자가 지도록 한다.

**공연 진행 시 확인 사항**

**○ 효자아트홀 대관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고 규정 위반 및 공연장 사용에 따른 질서문란 행위**

**발생 시 향후 대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연장 사용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공연 취소: 30일 이전에 반드시 취소원 제출

나. 공연시간 변경: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피할 경우 공연 14일전까지 협의 결정

다. 스탭회의: 공연 14일전까지 시설 사용 및 프로그램 내용 관련 협의

\* 필요사항: 큐시트 지참 및 운영 스태프 참석

**2. 현수막 제작 및 홈페이지 자료 게시에 관한 사항**

가. 현수막 제작 전 아트홀 담당자와 사전협의

나. 홈페이지에 게시 할 자료(포스터, 팸플릿 내용 등)를 담당자에게 공연 14일전까지 메일로 송부

> 담당자연락처: ☏ 221-9764

> 이메일: [px992116@posco.com](mailto:px992116@posco.com)

**3. 안전교육 관련 사항**

가. 스태프 및 출연자 전원은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법정교육 과정 중 직무 해당

과정 이수 후 수료증 제출(스태프 및 작업자 과정 or 출연자 과정 등, 수료 후 2년간 유효)

※ 온라인 안전교육: <https://safety.kbrainc.com/course/course_list.jsp>

**4. 기타사항**

가. 피아노 조율은 반드시 아트홀에서 승인한 조율사에게 의뢰 실시 후 개별 정산  
나. 공연장 로비에서 각종 부대행사(리셉션 및 물품판매 행위 등) 불가

다. 공연장내 연무효과기 사용 금지(예외: 드라이아이스)